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”을 추가하는 「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366호, 2026. 2. 19. 공포, 2026. 8. 20. 시행)됨에 따라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(안 제9조제1항), 참전유공자가 동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(안 제9조제2항)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 · 폐지 등, 없음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중 “한다)”를 “한다) 및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단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위탁”을 “공공단체의료기관, 위탁”으로 한다.

-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”란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의료지원) <신설>	제9조(의료지원)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”란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.
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한다) 및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단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--- ----- -----.
③ 법 제7조제1항·제2항 및 이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「국가	③ ----- ----- --- 공공단체의료기관, 위탁 - ----- -----

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의2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유공 자”는 “참전유공자”로 본다. ④ ~ ⑦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93